

---

# 입 법 정 보

2017-9호

---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 목 차



1.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	5
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6
3.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6
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7
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7
6.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8
7.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8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9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9
10.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	10
11.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	10
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11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11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12
1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	12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13
17.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14
1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14
19.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15
2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16
21.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16
22.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고용노동부) .....	17
2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17
2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19
25.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19
26.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19
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20

2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21
2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21
30.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22
31.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23
3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	24
33.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24
3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24
35.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	25
36.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26
37.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26
38.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26
39.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27
40.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28
4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29
4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30
43.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	30
44.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30
45.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31
4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31
4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32
48.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33
49.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34
50.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34
5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34
5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35
53.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민안전처) .....	37
5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38
55.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38
5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38

57.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39
58.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39
59.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40
60. 교통안전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40
6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41
6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41
6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42
6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42
65.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	43
66.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43
6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43
6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43
69.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44
7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44
7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45
7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46
7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46
74.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47
75.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47
76.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48
7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48
7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49
79.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49
80. 군 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49
81. 군 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50
8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50

# 1.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 예고일자 : 2017. 4. 14.

• 마감일자 : 2017. 5. 24.

○ 고인화점액체, 가연성물질 등에 대한 정의 개정, 순화약질량 용어를 신설하는 등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개정내용을 수용하고, 현행 고시에서 정한 위험물검사원의 선임인가 취소 직무정지 요청사항을 상위법령에 규정하는 한편, 위험물 안전운송을 위하여 송하인에게 정보제공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위험물 하역작업 전정전기로 인한 스파크 방지 등을 위하여 전기적 절연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위험물 안전운송을 도모하고자 함

○ 가. 용어 정의 개정 및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1호 다. 3), 라. 1), 사, 14호)

「국제해상위험물규칙」 개정 등에 따라 가연성물질, 방사성물질, 컨테이너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 순화약질량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위험물 정보 공유근거 규정 신설(안 제34조의2)

유관기관간 위험물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위하여 송하인에게 위험물 적재차량의 차량번호, 위치정보 제공, 운전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공 근거를 규정함

다. 위험물 검사원 자격기준 개선(안 제212조 제2항, 제3항)

1)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의 선임인가를 취소하거나 지정검사기관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지정검사기관이 선임인가 취소나 직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위험물 하역작업 개선(안 제159조)

국제해사기구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위험물 하역전 정전기로 인한 스파크 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인화성액체류를 하역할 경우 유탱커의 화물유관과 육상유관간 “전기적 절연” 되도록 개선함

## 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4. 14.                      • 마감일자 : 2017. 5. 24.
-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대상을 산림소유자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산림소유자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519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대상을 해당 산림에 대해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국유림 및 공유림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았거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하고,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권이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산림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산림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4조)

## 3.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4. 14.                      • 마감일자 : 2017. 5. 24.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행하던 임업시험에 관한 내용이 한국임업진흥원 설립(' 12.1.26)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이관되었으나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국립산림과학원을 임업시험 기관에서 삭제하여 임업시험의 실시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임업시험의 의뢰 기관에 국립산림과학원 삭제(안 제1조, 제2조)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행하던 임업시험 관련 내용이 한국임업진흥원 설립(' 12.1.26)으로 업무가 이관됨
- 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함(안 제1조의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기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하는 산림용 종자 시험에 관한 내용 등을 명확히 함
- 다. 수수료 결정 절차 등의 업무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하도록 함

(안 제8조의2)

- 산림용 종자 시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수수료 결정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 **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4. 14.                      • 마감일자 : 2017. 4. 19.
- 진료정보의 의료기관간 교류, 의료 IT 융합 등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료정보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4명을 증원하며, 첨단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실무인력 2명을 증원하고,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입원판정 전문인력 16명을 증원하며, 질병관리본부의 신종감염병·만성질환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시험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획조정부 및 희귀질환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며, 역학조사관 및 시험연구인력 23명을 증원하고,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감염병 진단·검사 담당 조직 및 인력을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하여 감염병분석센터로 설치하는 등 질병관리본부의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을 심판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6명 중 9명은 증원하며 7명은 보건복지부 정원을 재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용어 정비 및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4. 14.                      • 마감일자 : 2017. 5. 2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장애수당을 받

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됨에 따라 그 심사 대상 절차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 가.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는 장애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으로 함,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은 자, 65세 이상인 사람, 그 밖에 장애등급 변화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재심사하지 않을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제외함.(영 제30조의 2제1항 및 제2항)
- 나. 지자체장은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의 장애종류 및 정도를 서면으로 심사하여야 함(영 제30조의2제3항)
- 다. 장애등급 재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은 장애등급심사규정에 따름(영 제30조의2제4항)
- 라. 법 제32조를 제32조의3으로 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반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근거 조항 변경(안[별표5]제2호의가)

## **6.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4. 14.                      • 마감일자 : 2017. 5. 24.
- 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의 범위와 신청서식을 정하고자 함
- 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수급희망자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수급권이 소멸된 자로 함 (규칙 제8조의2)
- 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서식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로 함(규칙 제8조의3)

## **7.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4. 14.                      • 마감일자 : 2017. 5. 24.

-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수급희망자 등이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지자체장에게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 가능성 확인의 시기, 안내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부가급여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4. 14.                      • 마감일자 : 2017. 5. 9.

- 장기요양사업의 실태파악을 위해 3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법률 제14215호, 2016.5.29 개정)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특별현금급여계좌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일부 보완하여 지정 신청 및 등록내용에 대해 원활한 전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가.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안 제4조의2)

실태조사 되어야할 구체적인 내용 규정(제1항), 실태조사에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규정(제2항 내지 제3항)

- 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서식(안 제21조의2 및 별지 제38호 서식)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신청 시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

-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자격증 또는 면허의 종류 기입시 코드 번호 변경

##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4. 14.                      • 마감일자 : 2017. 5. 4.

- 특별현금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특별 현금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해 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표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

(법률 제14321호, 2016.12.2. 개정)에 따라 특별현금급여계좌 신청 방법·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안 제13조의2)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신청 시에 필요한 절차 및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공단으로 하여금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에 관한 사항을 안내토록 규정

## 10.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인)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4. 14.                      • 마감일자 : 2017. 4. 25.

○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국산 합판의 경우 2016년 5월 10일부터 「관세법」 제56조,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11.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인)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4. 14.                      • 마감일자 : 2017. 4. 25.

○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경우 2016년 5월 10일부터 「관세법」 제56조,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

의 최종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부과대상 물품은 말레이시아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

표 번호 :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 한다.

- 나. 적용기간은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3.96% ~ 38.10%로 함(자세한 내용은 법령안 참조)

## 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4. 14.      • 마감일자 : 2017. 5. 24.
-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차고를 설치하여야 하나, 최근 도심지역의 지가 상승, 주차요금 인상 및 차고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등으로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을 현행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에서 인접한 행정구역까지 확대(안 별표6)
- 나. 장기 임대한 자동차의 비율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면적기준 감면 상한을 현행 70%에서 90%로 상향 조정(안 [별표 6])

##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4. 14.      • 마감일자 : 2017. 5. 2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11호, '17.3.21. 공포, '17.6.2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재결정

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의 범위, 재결정보 체계 구축·운영의 사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4. 14.                      • 마감일자 : 2017. 5. 2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11호, '17.3.21. 공포, '17.6.2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재결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의 범위, 재결정보 체계 구축·운영의 사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재결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안 제24조의2)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 **1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4. 14.                      • 마감일자 : 2017. 5. 2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명칭이 개정('16.1.21)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이 필요함.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등 위탁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민안전처의 권한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며,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방차 운용과 관련한 사업을 명시하는 한편, 기술원의 보고 규정을 마련을 통해 기술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현행법의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행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 가.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안 제2조 1호의 가, 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에 따른 조치  
나. 소방차 운용자 전문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4조 제3항 11호)

1) 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차 검사·검수·정비 전문기관으로 교육시설 등이 이미 완비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소방차 운용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다. 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위탁·대행 업무에 대한 보고규정 명시(안 제14조의2 제2항 개정)

1) 업무 위탁 및 대행에 대한 보고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누수를 막고자 함

2) 동법 개정 후 하위법령에 보고대상 및 보고시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자 함

라. 소방장비 등 표준화 사업 추진에 대한 대행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9조 2항, 제14조 제3항 12호, 제14조의2 제2항 1호)

1) 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하고 있음

2) 그러나, 국민안전처의 권한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코자 함

##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4. 14.      • 마감일자 : 2017. 5. 26.

○ 군 복무 중 발생한 이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명 질환자의 난청에 대한 등급기준을 50데시벨에서 40데시벨로 조정하고, 팔·다리 노출된 면의 추상(흉터)에 대한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17.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4. 17.      • 마감일자 : 2017. 5. 29.
-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탐방로 설치 시 사전에 입지적정성에 관한 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불필요한 공원자원 훼손 및 탐방객 이용상 불편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2016. 12. 27.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과태료부과에 관한 근거 법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3 해당 법조문 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 국립공원 내 과도한 탐방로 개설로 인하여 공원관리상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탐방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별표 3의 해당 법조문란을 법령에 맞춰 수정(안 별표 3)
  - 1)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취사행위, 오물투기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해당 법조문을 법령에 맞춰 수정함
  - 2)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해당 법조문을 법령에 맞춰 수정함

## 1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4. 17.      • 마감일자 : 2017. 5. 8.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정은 합리화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특례 도입(안 제21조의2 신설)  
화관법 시행 전부터 운영하던 기존시설이 물리적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강화된 화관법 시설기준 준수가 곤란할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기업이 제출한 안전성평가서를 평가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영업 변경허가 대상 및 변경허가서 첨부서류 추가 등(안 제29조)

1) 보관·저장시설의 총용량, 연간 제조량 등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증가량의 의미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 이후의 누적 증가량으로 명확히 하고, 차량 등 운반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추가함.

2)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시설변경에 대한 적합판정 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해당 시설이 적합하게 변경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게 함.

다.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기준 규정 등(안 제46조)

개정된 화관법(시행 17.5.30)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자체장이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검토 및 통지 절차를 규정함.

## 19.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4. 17.                      • 마감일자 : 2017. 5. 29.

○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급유업 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511호, 2016.12.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서류 중 시설 및 장비 소유권 관계 증빙 서류를 추가하고, 선박급유업의 장비의 추가 도입이나 사업구역의 일시적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 가. 소유권 증빙 자료 제출 의무화(안제26조)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요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소유나 임차가 가능하다고 표현되어 있으나, 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제출 서류에는 소유권 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록할 장비 및 시설에 대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나. 선박급유업 사업계획 변경 신고 절차 마련(안제26조)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등록된 항만

외에서 일정기간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여,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및 신고확인증 서식 마련함

## 2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4. 17.                      • 마감일자 : 2017. 5. 29.
- 각 미용업(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분야별 영업자가 동일 영업장에서 함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에 제출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이·미용업소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투명한 가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밖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제3항)
- 나.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시 제출서류 간소화(인감증명서 삭제)(안 제3조의4제1항제1호, [별지 제6호 서식])
- 다. 동일 영업장에 각 대표자가 미용업을 2개 이상 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장을 갖추지 않아도 영업가능(안 제2조의 [별표1])
- 라. 이·미용업소 게시가격과 최종지불금액이 다를 경우 사전에 손님에게 고지하고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대상으로 규정(안 제7조의 [별표 4] 및 [별표 7])

## 21. 국민안전처위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4. 17.                      • 마감일자 : 2017. 4. 20.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 정원 13명(4·5급 3명, 5급 10명)을 전문직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특수재난에 대한 기술지원 및 협업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특수재난실의 국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조정하며, 성

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인 안전정책실 소속 안전사업조정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전환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2.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4. 17.      • 마감일자 : 2017. 5. 29.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안 제2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를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용노동 분야 관련업체·기관 및 단체로 정함.
- 나. 자원조사(안 제3조)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 함.
- 다. 자원조사표의 제출(안 제4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조사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안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함.

## **23. 애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양수신부)**

- 예고일자 : 2017. 4. 18.
- 마감일자 : 2017. 5. 29.

○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 근거를 마련하고, 심판조서에 실제 사용되는 속기의 근거와 원격영상심판 등에 따른 녹음 및 영상녹화의 법적인 효력 근거를 마련하며, 해양사고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 및 비상임심판관 해촉에 관한 근거 등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심판관 임용절차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적용(안 제13조제4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 14.3.24)으로 심판관의 신분이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이에 대한 임용절차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도록 개정

나. 비상임심판관 해촉 규정의 위임근거 마련(안 제14조제4항)

현행 비상임심판관 해촉 규정을 행정규칙(훈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신분이나 자격과 관련되는 사항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 상 위임근거를 마련

다. 동일선박 2개 이상 사건의 병합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24조)

사고 관련성 유무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을 무조건 병합심리토록 규정한 의무조항에서 관계인의 신청 또는 심판부에서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

라. 원격영상심판에 대한 법적효력 규정 명시(안 제41조의2)

해양안전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여 심리하는 대심(對審)이 원칙이나 해양사고관련자의 교통불편 등의 사유로 심판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영상심판을 실시할 수 있는데 원격영상심판의 법적효력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있어 이를 인정한다는 효력 규정 명시

마. 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에 대한 규정 상향정비 등(안 제42조의2, 안 제88조)

서류·증거물의 열람 복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필요한 근거 마련하며, 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명시

바.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법적효력 규정 신설(안 제45조의2)

심판 조서에 실제 사용되는 속기의 근거와 원격영상심판 등에 따른 녹음과 영상녹화의 증거능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사. 해양사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규정 신설(안 제87조의2)

해양사고의 조사·심판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 중인 각종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아. 시정명령 불이행 등 위반관련 과태료 금액 상향조정(안 제90조)

법률상 의무 이행 실행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액으로 책정된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 **2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4. 18.      • 마감일자 : 2017. 4. 24.

-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의 중앙회·경제지주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481호, '16.12.27)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 변경사항 등을 하위법령에 단순히 반영하는 등 입법 미비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 **25.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4. 18.      • 마감일자 : 2017. 4. 24.

-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의 중앙회·경제지주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481호, '16.12.27)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 변경사항 등을 하위법령에 단순히 반영하는 등 입법 미비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 **26.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4. 18.      • 마감일자 : 2017. 5. 30.

-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매각예정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수익가치 산출 시 과거 매각 실적 및 증권에 물납가액 등을 고려하여 자본환원율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경우 직전 3년간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및 해당 증권 수납가액 등을 고려하여 자본환원율을 정하도록 단서규정 신설함.(안 제27조 제4항)

## 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4. 19.                      • 마감일자 : 2017. 5. 29.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16.5)에 따라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자원순환기본법」 과 중복·유사 내용을 통합·정비 하며, 자원순환 관련 법령간 기능·역할 정비 및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기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재활용 관련 내용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자원순환기본법」상 중복·유사제도 정비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자원순환기본계획”, “순환이용성평가”를 규정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이와 유사한 “자원순환기본계획”,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를 「자원순환기본법」상 제도로 통합(현행 제7조 및 제8조의2 삭제)
- 나.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관련 사항 이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활용 시설 및 재활용업자 관리규정, 폐기물별 재활용 방법과 기준 및 준수사항,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벌칙 규정 등을 이관(안 제2조의3, 제15조의5~8, 제34조의10~27, 제38조의3~6, 제39조의2 신설, 현행 제36조 삭제, 안 제38조의2, 제39조,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 다.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 1)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의 가산금 요율 인하, 신용카드납부 등의 도입(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신설)
  - 2) 지방자치단체가 업사이클링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고, 환경부가 이에 대해 재정적·기술적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안 제

13조의2)

3) 표준용기 등록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등록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재사용을 저해하는 표준용기에 대한 등록취소 제도 도입(안 제15조의2)

## 2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4. 19.      • 마감일자 : 2017. 5. 29.
-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제71조, 제73조 개정 및 제72조의3이 신설(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개정, 2017. 12. 30. 시행)됨에 따라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국가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의 시행(안 제3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려는 것임.
- 나. 장애인재활상담사 시험과목 신설(안 제38조, 별표 4)  
국가시험의 방법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의 필기시험을 추가하고, 시험과목을 별표 4에 정함

## 2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4. 19.      • 마감일자 : 2017. 5. 29.
- 배출권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이 시장에서 필요한 물량을 원활히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매년 부족한 배출권을 차입을 통하여 해결한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차입한 양이 누적됨에 따라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에 이르면 보충해야할 배출권의 부담이 커지는 위험이 있으므로 배출권 차입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마지막 해에 매입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 다음 계획기간 업체별 할당량을 정할 때 배출권의 거래를 통하여

시장활성화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안 제3조, 제12조)

배출권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할당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차입 누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도별 차입 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2차 계획기간부터는 차입한도가 10%이나, 이를 15%로 확대함으로써 할당업체의 배출권 제출 이행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고, 이전 이행연도에 차입한 양이 누적됨에 따라 계획기간 마지막에 보충해야할 배출권의 부담이 커지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 이행연도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전년도 차입비율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산정한 비율로 함

### 30.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4. 19.      • 마감일자 : 2017. 5. 29.
- 방위사업법 개정(제14422호, 2016.12.20.,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국방품질경영인증, 군수무역 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청렴서약서 위반의 경우에 강화된 입찰참가자 격제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등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위사업청장의 소요수정 요청의 사유를 구체화하여 추가하며,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작성하는 핵심기술기획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 시기, 소요량 및 작정운용성능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단계의 설계검토, 시험평가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소요의 변경의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법 상의 타당성 조사 등 예산상 사유가 발생할 때, 운용환경 등의 사유로 무기체계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의 변경의 필요한 때 등으로 구체화하여 추가함(안 제8조제4호 내지 제7호 신설)
- 나.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소요결정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작성하는 핵심기술기획서의 법적근거를 마련(안 제10

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 다.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기준 및 인증의 절차 등의 내용을 마련(안 제25조 개정)
- 라.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시행을 위한 서식을 마련(제57조의3 신설 및 별지26호 서식 신설)
- 마. 강화된 부당이득 가산금 산정 기준 및 방법을 명시(제57조의4 신설 및 별표5 신설)
- 바. 청렴서약서 위반의 경우 강화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별표3 개정)

### 31.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4. 19.                      • 마감일자 : 2017. 5. 29.
- 방위사업법 개정(제14422호, 2016.12.20.,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국방품질경영인증, 군수무역 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등) 및 위원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 강화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해임 및 해촉 규정 등 시행령의 집행 중 발견된 입법 미비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 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제척·기피·회피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의 마련(안 제13조의2, 제15조의2, 제18조의2 신설, 제17조, 제18조 개정)
- 나. 국방품질경영인증제도 신설에 따라 해당 업무의 권한을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위탁(안 제71조 개정)
- 다. 취업제한여부 심사대상자에 대한 업체의 심사결과 확인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과기준 마련(안 제72조 신설)
- 라.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신설에 따른 제도 시행의 방법 및 절차 등의 근거 마련(안 제68조의5 신설)
- 마. 원가계산 자료의 허위 제출 등으로 인하여 환수하는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규모 확대에 따라 가산금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

정(안 제69조제1항 개정, 안제69조제3항 신설)

### **3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4. 19.                      • 마감일자 : 2017. 4. 26.
- 각급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평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확인 된 감사의뢰 사항을 감독기관 및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권익구제를 촉진하며, 위원회의 부패신고자 보호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행력을 제고하고, 신고자의 책임감면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며, 부패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를 포함하여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3.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4. 19.                      • 마감일자 : 2017. 5. 30.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년간 인정되던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 유효기간에 대해, 가치 평가방법 중 활용도가 높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재산 확보율에 대한 보고 및 기준 충족 점검 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인정하여, 동일한 재산임에도 1년 단위로 재산을 재평가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행정적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 나. 대학-전문대학 간 통·폐합 시 학생 정원의 의무감축 비율을 낮추거나 면제하고, 전문대학의 부분통합을 인정하는 등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대학의 통·폐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 **34. 애양수신부위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애양수신부)**

- 예고일자 : 2017. 4. 20.
- 마감일자 : 2017. 4. 24.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4에 따라, 성과평가 대상인 한시조직에 대하여 2년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에 두는 해양수산생명자원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연구사 1명)을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두는 해양예보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2명(4급 1명, 연구사 1명)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전환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한시조직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육종연구센터 내 해조류 보급 전담 인력 1명(연구사1)과 참다랑어 연구·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1)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정원표에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 **35.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4. 20.
- 마감일자 : 2017. 4. 24.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7.3.21, 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선체조사위원회 정원 및 조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 가. 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내지 제12조)

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다. 위원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라. 전문위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마. 증인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바.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36.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7. 4. 20.                      • 마감일자 : 2017. 5. 30.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해당 기관에 ‘정책개선권고’ 이외에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분석평가 실무담당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석평가기관 지정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법률 제14443호, ’ 16.12.20. 공포, ’ 17.6.21. 시행)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권고 시 개선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고, 권고 및 의견표명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내용(법률 제14703호, ’ 17.3.21. 공포, ’ 17.9.22. 시행)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재 시행령 운영상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37.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4. 20.                      • 마감일자 : 2017. 5. 30.
- 중소기업 용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정리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려는 것임
- 가. “중소기업 용어 정리(안 제10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에서 ‘중소기업’ 용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변경

### 38.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4. 20.                      • 마감일자 : 2017. 5. 30.
- 동일한 사유의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최대 참여제한 기간 확대, 실패·중단 과제에 대한 제재 감면 기준 신설, 사업비 환수 기준 신설 및 중소기업 용어 정리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려는 것임
- 가. 동일한 사유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최대 참여제한 기간 확

대 (안 제14조의3제4항 개정, 별표 3 신설)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 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 등의 참여제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횡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함.

2) 동일 과제에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였고, 과거에 그 중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현행 5년).

나.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제재 감면 가능 근거 등 신설(안 제14조의3제8항 신설)

실패사업이나 중단사업의 경우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제한이나 사업비 환수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을 신설함.

다. 사업비 환수기준 신설(안 제14조의3제9항 신설, 별표 4 신설)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사업비 환수 기준·범위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신설함.

라. 중소기업 용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변경(안 제53조 및 제55조 개정)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참여주체와 지원 사업에서 중견기업 용어를 명시함

### 39.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4. 20.      • 마감일자 : 2017. 5. 30.

○ 「모자보건법」(법률 제14423호, '16.12.2. 개정, '17.6.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 가. 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난임시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 함(안 제12조의3)

나. 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난임전문상

담센터 운영위원회를 두도록함(안 제12조의4)

#### 40.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7. 4. 20.                      • 마감일자 : 2017. 5. 31.

○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모든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은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되, 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둘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예외 경우를 명시하고,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근거,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한편, 법 개정에 따라 기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확정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제출근거 마련(안 제4조의3제3항)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확정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정보화계획 수립 예외대상 명확화(안 제13조제1항)

정보화계획 수립예외 대상을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수립한 사업, 다기능 사무기기 및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사업, 경미한 정보통신공사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정보화계획 미수립 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근거 마련(안 제13조제5항)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수립하지 않는 근거, 대상사업 내용 및 예산, 대상사업에 수반되는 정보화사업의 내용 및 예산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정보화계획 수립 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안 제13조제2항 및 별표 삭제)

정보화계획 수립대상이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모든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총사업비 100억 이상의 사

업에 대한 정보화계획 수립 권고 관련 사항 및 정보화계획 반영대상 사업이 열거된 별표1을 삭제함.

#### **4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7. 4. 20.                      • 마감일자 : 2017. 5. 30.
-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발굴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범위에 운수 및 창고업, 방송업,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발굴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3 신설)
- 나. 과거에 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추가하는 등 참여제한 기간을 개정하여 별표 3을 신설함(안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개정, 별표 3 신설)
- 다.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 기준 및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별표 4 신설)
- 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대한 전제가 없으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 뿐만 아니라 법 제18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등의 경우에도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전제 내용을 추가하고,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기관·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을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개정함에 따라 내용이 일치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개정)

마. 서비스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범위에 운수 및 창고업, 방송업,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함(안 별표 1 개정)

## **4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4. 20.                      ● 마감일자 : 2017. 5. 30.
-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 폐지 및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12.27.)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간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43.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인)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4. 20.                      ● 마감일자 : 2017. 5. 30.
-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강기능식품인 인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 인삼시장에서 우리나라 인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자율사항인 인삼 경작 신고를 의무화하고,
- 인삼의 소비·유통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인삼류 유통 활성화를 통한 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현행 수삼의 연근확인, 인삼류의 연근표시 및 인삼류의 제조·검사·표시 검사 기준을 개선·완화하고자 함

## **44.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4. 20.                      ● 마감일자 : 2017. 4. 25.

- 전역예정 군인에게 전직지원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여건 마련과 군 복무중 성실 복무 유도
- 가. 군인사법시행령상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제한되어, 이를 삭제함으로써 전직지원교육 대상을 확대.
  - \* 전직지원교육은 의무복무중인 군인에게도 온라인진로설계 및 진로교육, 부대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실시중임.
- 나. 전직지원교육 대상, 교육기간,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국방부령, '16.11.2)에 의해 구체화되어 시행중으로, 군인사법시행령에서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전직지원교육 대상을 한정 불필요.

#### **45.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4. 21.                      • 마감일자 : 2017. 5. 31.
- 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시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능 등이 적정한 심사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따라 현실 운영에 맞게 명확화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기한을 출산 후 60일까지로 규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 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등(안 제11조의2, 안 제13조 등)
  -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약제 급여적정성 ‘심의’가 아닌 ‘평가’로 명확화하고, 산정 기준에 따라 약가가 결정되는 경우 약평위 평가를 생략토록 하여 절차 간소화 등
- 나. 난임 시술비용 급여화에 따른 비급여 목록 정비(안 제24조제1항)
  - 난임 시술비용은 비급여 목록에서 제외하되,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배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비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목록 정비

#### **4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4. 21.                      • 마감일자 : 2017. 5. 31.
- - 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시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능 등이 적정한 심사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따라 현실 운영에 맞게 명확화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기한을 출산 후 60일까지로 규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 가.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건 명확화(안 제22조제1항)
  - 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규정
- 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 확대 및 이용권 신청기간 명확화(안 제24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기한을 출산 후 60일까지로 규정하는 등 출산, 조산 또는 사산 이후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4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4. 21                      • 마감일자 : 2017. 5. 31.
- - 공단이 수행하는 예방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557호, 2017.2.8. 공포, 8.9 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 내용을 정함.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이용권의 사용기간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예방사업 구체화(안 제9조의2)
  -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제공이나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등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단이 수행하는 예방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함

나.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등(안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2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을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확대하고(안 제23조제2항), 이용권의 사용기간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을,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한다)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23조제7항)하고, 제23조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용권을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사용 하도록 함(제24조제2항)

#### 48.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7. 4. 21.                      • 마감일자 : 2017. 4. 28.
-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서해안권 해양유산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신설되는 ‘서해문화재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9명(4급1, 6급1, 연구관2, 연구사5)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리기술과에 분장하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2019년 5월 29일까지 두는 한시조직에 배정된 한시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리기술과 분장사항 신규 추가(안 제7조제7항제21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지도·감독 업무를 수리기술과에 분장하고자 함
- 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추가 배정(안 제22조의2제1항)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배정 위한 별표 개정
- 다. 한시정원 규정 개정(안 제24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 및 존속기한을 규정한 조항 신설
- 라. 기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위치 변경,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추가

지정 등 반영을 위하여 정원표(별표 1, 별표 13, 별표 14)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표(별표 17) 개정

#### **49.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4. 21.                      • 마감일자 : 2017. 4. 26.
-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으로 운영중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맞춤형농정과의 존속 기한을 2019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연장된 존속기한을 반영하려는 것임.

#### **50.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행정 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4. 24.                      • 마감일자 : 2017. 5. 1.
-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으로 지방재정경제실에 두는 재정협력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행정자치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두는 빅데이터분석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8년 5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 **5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여성 가족부)**

- 예고일자 : 2017. 4. 24.                      • 마감일자 : 2017. 6. 5.
- 민원처리체계 개선을 위해 국내·국제결혼중개업 변경 수수료를 폐지하고,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서식을 통합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를 통합(규칙 제4조 제1항)
- 나. 변경신고 수수료 및 변경등록 수수료 폐지(규칙 제15조)

## 5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4. 24.                      • 마감일자 : 2017. 6. 5.
- 리콜통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추가하고, 리콜통지서 발송을 반드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도록 규정하며, 정부가 결함 및 하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546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의 제출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요구에 대한 법령 정비(안 제15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  
 차대번호 표기부호배정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로 충분히 입법목적은 달성할 수 있어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분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 리콜통지 시 문자발송 추가 및 성능시험대행자의 리콜통지 대행의 무화(안 제41조제1항, 안 제41조제5항 신설)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우편 이외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리콜통지 업무를 성능시험대행자가 대행하도록 의무화하며, 성능시험대행자가 이를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검사 자료의 종류 및 제출기한 규정(안 제49조의6 및 별표 5의2 신설)

자동차제작자들은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검사용 고장진단기 제작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진단을 위한 자료 및 정비매뉴얼 등을 자동차가 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어 최초로 판매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공토록 하고 장치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갱신토록 함.

라. 제작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기록유지 의무 및 제출방법 규정(안 제51조, 안 제52조, 안 제150조제1항, 안 제150조의2제1항, 안 별지 제32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32호의5서식까지 신설)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관련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날부터 5년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해당 자료를 발행한 날의 월말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 사본과 서식을 보고하도록 하며, 해당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출한 경우 보고한 것으로 간주함.

마. 튜닝작업을 할 수 있는 제작자의 요건 일부 완화(안 제55조의2제1항) 제작자등이 튜닝작업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검사시설과 관련하여 자동차의 차종, 규모에 관계없이 리프트나 피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갖추도록 규정하여 제작자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튜닝산업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바. 국제업무 전담기관 지정 관련 서식 마련(안 제149조의2 신설, 별지 제95호의2서식 및 별지 제95호의3서식 신설)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등을 마련함.

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21의2제1호)

특별시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대해서는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구조를 갖추되 도시 미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공업지역 등 도시미관과의 조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도 불필요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 용도지역 및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53.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4. 24.      • 마감일자 : 2017. 6. 5.

○ 2014년 세월호 사건 등 대형 사고를 계기로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상황전파와 지휘·협조를 지원하는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각 재난관련기관이 다양한 개별 무선통신망(TRS, VHF, UHF 등)을 사용하고 있어 재난대응시간, 주파수, 예산 등 자원 낭비의 요소가 있음.

이에 따라, 재난발생 시 재난관련기관 간 신속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전국적 단일 무선통신망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15.11~'16.6)을 실시하였음.

현재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재난안전통신망은 국가예산으로 전국 규모로 구축하여 다양한 기관이 함께 장기적으로 이용 및 운영하고 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개선 또는 재구축하게 되므로, 효율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망과 국내 통신자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관련된 기존 법 규정 중 상충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별도의 입법이 필요함.

○ 가. 이 법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의 전달로 재난의 예방·대응 및 복구가 효과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관계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민안전처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설비 또는 시설의 제공,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및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전략 수립 및 국내외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5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7. 4. 25.                      • 마감일자 : 2017. 5. 15.
- 문화재보호법을 개정(‘17.3.21. 공포)하여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시행규칙 상의 자구를 변경하고자 함
-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0조, 제26조)

#### **55.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7. 4. 25.                      • 마감일자 : 2017. 5. 15.
- 문화재보호법을 개정(‘17.3.21. 공포)하여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 상의 자구를 변경하고자 함
-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19조)

#### **5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4. 25.                      • 마감일자 : 2017. 6. 5.
- 동일 대출에 대해서 동일한 출연금을 납부하게 하여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이 금융회사 등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 제

외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도 제외하고,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역시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출연대상대출금에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제외(제1조의2제2항제1호나목1)(하) 및 (가)신설)

### **57.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4. 25.                      • 마감일자 : 2017. 6. 5.
- 동일 대출에 대해서 동일 출연금을 납부하게 하여 금융회사등의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이 금융회사 등의 기술보증기금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등의 기술보증기금 출연 대상이 되는 대출금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출연대상대출금에서 한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제외(제4조제1항제2호처목 신설)

### **58.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4. 25.                      • 마감일자 : 2017. 6. 5.
- 동일 대출에 대해서 동일 출연금을 납부하게 하여 금융회사등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이 금융회사 등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한국수

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등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상이 되는 대출금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출연대상대출금에서 한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제외(제1조제1항제2호커목 신설)

## 59.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4. 25.      • 마감일자 : 2017. 6. 5.

-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이 개정(법률 제14538호, 2017.1.17. 공포, 2017.7.18. 시행)됨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등 세부 절차 및 장착대상 및 성능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운행기록 활용 범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운행기록 활용범위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안 제29조의4 신설)  
최소휴게시간, 연속운전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의 확인에 운행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해 동 사항들의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함

-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대상 기준 마련(안 제3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사업용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대상 및 장착 제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 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성능 기준 마련(안 제30조의2 제3항 신설)

차로이탈경고기능의 세부 성능 기준을 규정함

## 60. 교통안전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4. 25.      • 마감일자 : 2017. 6. 5.

-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이 개정(법률 제14538호, 2017.1.17. 공포, 2017.7.18. 시행)됨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등 세부 절차 및 장착대상 및 성능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운행기록 활용 범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안 제3조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증빙 서류를 지참한 자에 대하여 장치 장착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나. 과태료 부과에 구체적인 기준 마련(안 별표9 제14호 및 제15호 신설)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교육 미이수에 대해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6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4. 25.                      • 마감일자 : 2017. 6. 5.
- 해군 정보병과와 해병대 기갑·군수병과 신설에 따른 병과, 병과장 운용 관련 조항에 반영하고, 군인사법에 ‘장관급(將官級)’ 이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과 다른 법령을 개정하기 위함

## 6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4. 25.                      • 마감일자 : 2017. 6. 5.
- 가. 現「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사적 여행)’ 대상자에 휴직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휴직자는 휴직 기간동안 국외여행이 제한됨.  
휴직자에 대한 국외여행 제한은 국외여행이 일상화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 시 과도하며, 별도 관리하고 있는 위탁·전직지원교육자와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휴직자를 공무 외의 국외여행 대상자에 포함코자 함.

- 나. ‘공무 외의 국외여행’ 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불명확하여 발생하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명확한 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함.
- 가.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한 대상자에 휴직자까지 포함하여 확대 (안 제15조제3호 개정)
- 나. 휴직자(육아·가사) 국외여행 시, 휴직 목적과 부합되도록 관련 근거 명시(안 제15조 본문 개정)
- 다. 위탁·전직지원 교육 중이거나 휴직기간 중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명시(안 제15조제2항 신설)

### **6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4. 25.                      • 마감일자 : 2017. 5. 15.
- 자산규모별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 운영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 (’ 17.4.18. 공포, 7.1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6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7. 4. 26.                      • 마감일자 : 2017. 6. 5.
-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확대 사항을 공무원 수당규정에도 반영하여 민간과의 형평 및 남녀공무원의 육아참여 확대와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기 위함.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휴직일로부터 최초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안 제11조의3)하되, ‘17. 7. 1. 이후 출생하는 둘째이상 자녀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 65.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 예고일자 : 2017. 4. 26.                      • 마감일자 : 2017. 5. 14.
- 증가하는 도시농업 기술수요 대응과 부처 간 협업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인 도시농업과를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1명(농업연구관 1명)을 소속기관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66.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4. 26.                      • 마감일자 : 2017. 6. 5.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2017. 4. 18. 공포)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조건 부자본증권 발행 근거가 마련 됨에 따라 발행 절차 및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정하고,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수단을 다양화 하는 등 기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6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4. 26.                      • 마감일자 : 2017. 6. 5.
- 군 복무 중 부상(질환)을 입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결정 기준의 변경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등록신청하여 서면으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6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4. 27.      • 마감일자 : 2017. 5. 2.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에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약품안전평가과를 정규 직제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시정원 3명(4급1, 5급1, 6급1)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69.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인)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4. 27.      • 마감일자 : 2017. 6. 7.
- 군사법원의 독립 및 군 사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를 축소하고, 군판사를 영관급 이상의 군법무관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3722호, 2016. 1. 6. 공포, 2017. 7. 7. 시행)됨에 따라 군판사의 파견·겸임·순회재판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군판사의 대외기관 파견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7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인)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4. 27.      • 마감일자 : 2017. 6. 7.
- 잠수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잠수작업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근절하고자 잠수작업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정비하고, 근골격계질환 발생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방법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유해요인조사 결과 주지방법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용광로나 가열로 등 인위적 열원 외에 폭염 등과 같은 자연적 열원에 노출되는 장소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치를 마련하는 한편, 황사·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명확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사항 정비(안 제522조, 제523조, 제525조 등)
- 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 및 그 결과 주지방방법 구체화 등(안 제658조, 제661조제2항)
- 다.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기준 마련(안 제566조, 제567조제2항)
- 라. 황사·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명확화(안 제605조제1항)
- 마. 추락 또는 낙하물방지망 안전인증 대상품 조정에 따른 개정(안 제14조, 제42조, 제43조 등)

## 7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4. 28.      • 마감일자 : 2017. 6. 7.
- 민간협업 창구부서 지정, 행정기관 간 협업시설 등 무상제공, 사무공간 혁신, 지식행정활성화계획관련 법령 현행화, 정책연구 관리 체계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민관협업 창구부서 지정 신설(안 제46조제2항)  
기업 등 민간의 협업제안 시 접수와 상담, 소관부서 안내 등을 총괄하기 위해 기관별 민관협업 창구부서를 지정하고자 함
- 나. 협업시설 등 무상제공 규정 신설(안 제46조의6제2항)  
행정협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공동시설·공간·설비 등을 제공한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다. 사무공간 혁신 근거 규정 신설(안 제46조의7제1항제6호·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해 사무공간 혁신 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하고자 함
- 라. 지식행정활성화계획 관련 법령 현행화(안 제47조제2항·제48조제1항)  
행정기관은 지식행정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도 매년 범정부 지식행정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법령에 수립 시기를 정하지 않아 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지식행정활

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다. 정책연구 관리의 체계화 근거 마련(안 제49조의2·제54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정책연구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조례 위임 근거 마련하고자 함

## **7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 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4. 28.                      • 마감일자 : 2017. 6. 7.

- 마약류 취급보고 상세방법 및 보고서식을 마련하고 마약류 용기 또는 포장의 문자 표시사항에 대한 상세기준을 마련하며 행정처분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마약류 제조 시 손실허용기준 폐지 등 그 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7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 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4. 28.                      • 마감일자 : 2017. 5. 18.

- 가. 개발계획의 수립주체 변경 (안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22조 개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종전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은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수립 주체는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됨. 이를 반영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광지역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주체,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소속 등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문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함.

나.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 삭제 등 (안 제13조, 제19조 개

정)

민자유치사업의 정의, 지원 근거조항 등 현행법이 인용중인 관련 조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모두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민간개발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조항이 삭제됨. 이에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74.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4. 28.                      • 마감일자 : 2017. 6. 7.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시행관련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사문화된 시행규칙의 과태료 징수절차를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75.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4. 28.                      • 마감일자 : 2017. 6. 7.
- 특·광역시 산주에 대한 서비스 기반 구축 및 유사단체(농·수협)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림조합의 설립인가기준을 완화하고, 「산림조합법」 개정(법률 제14520호, 2016.12.27. 공포)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특·광역시 조합 설립 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수 기준을 완화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제1호가목, 제2호가목)
- 나.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회원에 대한 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공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등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 다. 회원의 여유자금을 회원에 대한 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금융기관

에 대한 대출,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법인에 대한 대출 등으로 운용·관리 할 수 있는 규정과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3)

## 76.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4. 28.      • 마감일자 : 2017. 6. 7.
- 산림에 대한 국민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분야별 법정계획의 증가로 산림분야 최상위 계획인 산림기본계획과 부정합성이 발생하여 산림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하고, 산림행정의 실행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산림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기본계획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 시·군산림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11조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군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나. 산림기본계획 수립 주기 조정(안 제11조제4항)
  - 산림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하되, 환경적·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 7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예고일자 : 2017. 4. 28.      • 마감일자 : 2017. 6. 9.
- 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세종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3조제1항 등)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이 산정된 경우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의견청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종특별자치시장(212.7.1. 출범)을 추가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나. 별지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 서식)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을 개선하고, 서식내용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킴.

## 78. 제건축초과이의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4. 28.                      • 마감일자 : 2017. 6. 9.
- 가. 개시시점·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조사·산정방법(안 제6조제1항)  
개시시점의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이 없어 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또는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5조를 준용하여 주택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조사·산정하도록 함.
- 나. 한국감정원을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으로 일원화(안 제7조제1항)  
주택가격 공시업무는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도록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16.9.1.)됨에 따라 개시시점의 공시된 주택가액이 없어 산정하는 때 또는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 함.
- 다.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지정(안 제13조의2 신설)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으로 지정하고,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가 부담하도록 함.

## 79.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인)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4. 28.                      • 마감일자 : 2017. 5. 15.
- 가. 현행 각군 참모총장에게만 위임되어 있는 군 장려금 소관업무를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위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해병대사령관이 군 장려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
- 가.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의 군 장려금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권한위임 내용 추가

## 80. 군 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4. 28.                      • 마감일자 : 2017. 5. 15.
- 가. 상위법인 군인사법의 ‘군장학금’ 명칭 개정에 따른 시행령상의 ‘군장학금’ 명칭을 변경
- 나. 현행 각군 참모총장에게만 위임되어 있는 군장학생 소관업무를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위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해병대사령관이 군장학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

## **81. 군 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4. 28.                      • 마감일자 : 2017. 5. 15.
- 가. 상위법인 군인사법의 ‘군장학금’ 명칭 개정에 따른 시행령상의 ‘군장학금’ 명칭을 변경
- 나. 현행 각군 참모총장에게만 위임되어 있는 군장학생 소관업무를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위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해병대사령관이 군장학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

## **8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4. 28.                      • 마감일자 : 2017. 6. 7.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 공무원의 의견청취를 의무화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소방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 수립의 심의과정에서 일선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국민안전처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6조제5항)